

1) 토지조사사업의 전개와 내용

일본은 명치유신(1868)을 통하여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급격하게 받아들였고, 근대화와 군사공업 확립에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여 신흥자본주의를 형성하였다. 일제는 신흥국가로서 그들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빈약한 자본축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값싼 식량과 공업원료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봉건조선과 일본의 노동자·농민에 대한 착취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상품시장 개척과 식민지 침략을 도모하고자 군사적·침략적 성격을 띤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조선의 봉건적 경제체제를 근대 자본주의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이미 1905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1910년까지 완전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준비공작을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첫번째 수탈목표는 토지였으며,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근대적 사유제도를 확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본 상업자본이 조선에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 당시 일본인의 토지소유에 주된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둘째, 토지사유권이 관습상 확립되어 있었으나 법률로 보장된 일물일주(一物一主)의 배타적 사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다. 셋째, 토지의 상품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일본인의 토지매수에 대하여 조선농민뿐만 아니라 봉건적 권력자와 양반귀족까지 완강히 반항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본 상업자본의 토지점유는 점차 진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조선의 법률상 위법이었으며,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매매와 점유의 합법화가 강력히 요청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토지소유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과 더불어 식민지통치에 필요한 토지조사사업을 서두른 또 다른 이유는, 식민지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즉, 일본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끊임없는 팽창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수입을 정비함으

일본인의 토지 소유면적

(1910. 6. 현재, 단위: 명·정보)

항 목	택 지	밭	논	산림·평야	계
소유자수	4,194	1,141	1,719	691	7,745
소유면적	2,203	23,271	36,192	15,269	76,935

출전: 권태섭, 『조선경제의 기본구조』, 1949, 62쪽.

로써 총독부의 세원(稅源)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리고 미곡의 일본수출을 위해서는 토지개량 및 토지이용의 자유가 필요했다.

일본은 1906년에 조선정부를 강요하여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과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일본 상업고리대자본에 종속된 부채농민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호적정비와 함께 토지등기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의 소재·지목·지번·지적·소유자를 조사하고, 지적도를 작성하여 각 필지의 위치·형상·경계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가(임대가격)·지형·지모(地貌)를 확정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에 앞서 벌써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하여 7,745명의 일본인이 이미 토지를 소유하였고, 그들의 토지 소유면적은 7만 6,935정보에 달했다. 결국, 이때는 전 단계에서 강제 진출하여 조사한 토지를 총독부에 '신고' 또는 '통지'하고 토지대장 등 각종 장부를 맞춰 소유권을 등기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894년에 이미 조선정부도 근대적 측량법에 따른 양전(量田)을 계획하였으나 정변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 또한 양전을 맡을 새로운 독립기구로서 양지아문(量地衙門)을 1898년에 설치하였고, 미국에서 근대적 측량기사를 초빙하여 양전기술을 습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토지등기작업을 겸행했으나,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 심화로 국내정세가 불안정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일제가 추진한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은 토지소유권 조사, 토지가격 조사, 지형·지모의 조사 등으로 분류되었다. 약육강식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신고주의(申告主義)에 따라 진행된 토지소유권 조사는 권세가의 단순한 토지수조권을 근대적 소유권으로 확정하고, 실질적인 토지보유자인 농민의 경작권을 박탈하였다. 그밖에 많은 역둔토(驛屯土), 궁장토(宮庄土) 등의 국유지가 총독부 소유지로 편입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봉건계급 대 농민의 관계는 지주 대 소작농 관계로 급전하였다. 이와 같이 봉건적인 소유관계가 근대 자본제적 소유관계로 바뀌었으나, 그것은 종전의 수조권자가 수조하던 절반 공납을 절반 소작료로 재생시켰고, 이로써 반(半)봉건적 소작관계를 창출했다.

다음 표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후의 소작화 경향을 나타낸 것인데,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작 겸 소작농의 감소(13.5%)가 뚜렷하다. 소작농화 추세는 1913~1917년에 연평균 39.5% 이던 것이 1939년에는 55.7%로 16.2%나 급증했고, 여기에 자작 겸 소작농을 합하면 무려 81%에 이르고 있다.

일제시대 조선농민의 소작화 경향

(단위 : 천호·%)

5개년 평균	자작농	자작 겸 소작농	소작농	계
1913~1917	555 (21.7)	991 (38.8)	1,008 (39.5)	2,554 (100.0)
1918~1922	529 (19.8)	1,051 (39.2)	1,098 (41.0)	2,678 (100.0)
1923~1927	529 (20.2)	920 (35.1)	1,172 (44.7)	2,621 (100.0)
1928~1932	497 (18.3)	853 (31.5)	1,362 (50.2)	2,712 (100.0)
1933~1937	547 (19.2)	732 (25.6)	1,577 (55.2)	2,856 (100.0)
1939	539 (19.0)	719 (25.3)	1,583 (55.7)	2,841 (100.0)

비고 : 괄호 안은 비율임.

출전 :鈴木武雄, 『朝鮮の經濟』, 조선총독부, 1944, 246쪽.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지주 상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조선인은 100정보 이상 규모와 200정보 이상 규모가 다같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0정보 이상 규모에서 조선인은 26%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일본인은 계속 증가상태를 보이고 있다.

일제시대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지주 변화 추세

(단위 : 명)

구 분		연 도			
		1919	1925	1931	1936
100정보 이상	조선인	360	290	319	336
	일본인	321	561	361	370
200정보 이상	조선인	186	45	49	49
	일본인	169	192	187	191

출전 : 주봉규, 『한국농업경제사』, 선진문화사, 1992, 208쪽.

1928년도 순천군 일본인 농업경영자 조사실태를 보면 서원행태랑(栖原幸太郎)은 1914년 3월에 농장을 설립하였는데, 소유 경지면적은 밭 70정보, 논 20정보였다. 업종은 보통 농사였으며, 영농방법은 소작형태였다. 자하선농주식회사(滋賀鮮農株式會社)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경영했고 밭은 300정보, 논은 100정보로 전자보다 훨씬 많은 400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영농종별은 보통 농사였으며, 영농방법은 소작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들 외에도 순천에는 100정보 이상의 조선인과 일본인 지주가 46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유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순천군 일본인의 대지주 현황

(단위 : 정보)

구 분	소유지 면적			영농종별	영농방법	창립시기
	밭	논	계			
서원행태랑	70	20	90	보통농사	소 작	1914년 3월
자하선농주식회사	300	100	400	보통농사	소 작	불 명

출전 : 조선총독부, 『朝鮮の物産』, 1927, 272쪽.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는 조선농민을 과소농화하였으며, 반봉건적인 소작농으로 변화시켰고, 고율의 소작료와 불안정한 소작조건으로 말미암아 이농현상의 격증과 농민층의 양극분해가 정이 촉진되었다. 당시 조선농업의 실태는 수도작의 경우 단보당 수량이 현미 1~1.5석, 대맥은 1.5석, 소맥은 1.0석, 대두는 1~1.5석 내외로 일본 수준의 절반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산의 충분한 잠재력을 안고 있는 조선농업, 특히 전남지역을 미곡과 면화 생산기지로 만들려는 일제침략자에게 토지는 야욕의 주요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1904년 간행된 『조선농업론』에는 전남의 경지면적이 14만 7,342결로, 전국 총면적 100만 4,066결의 14.7%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재정의 17.9%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농토 수탈로 시작된 일본의 침략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 6월 현재 일본인 토지 소유자 7,745명이 토지 7만 6,935정보를 소유하였다. 특히 1908년 자본금 1,000만 원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10년에 1만 1,035.5정보, 1920년에 7만 7,297.1정보, 1930년에 무려 10만 5,336.8정보를 소유하게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신고주의라는 방법을 택하여 강력한 세력이었던 지주의 수조권을 사유권으로 신고케 하여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소작농의 도지권(賭地權)은 토지소유권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말았다. 그 결과 지주가 공공연히 도지권의 존재를 부인하고 소작농의 관습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나타나, 소작인들은 도지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주에 대항하였으나, 대부분은 도지권 존재의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지의 증가 추이

(단위 : 정보)

연 도	논	밭	기 타	합 계
1910	8,643.8	2,300.6	91.1	11,035.5
1920	51,149.7	19,405.1	6,743.0	77,297.8
1930	46,682.5	16,994.4	41,709.1	105,386.0
1931	46,584.8	16,887.8	60,092.8	123,565.4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3.

도지권 소유자들은 도지권 확인이 소송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자 도지권을 가진 소작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주가 도지권을 인정할 때까지 4년간 소작료를 불납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이제는 지주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도지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4년간의 불납 그 자체가 도지권을 소멸하게 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소작인들은 도지조합을 조직하여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저항하였다. 예를 들면 1917년 대동강 연안의 대동군 남곶면 대이도리·소이도리 등에서 리별 도지조합이 조직되었고, 1923년에는 연합도지조합이 조직되어 지주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운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11년경에는 진주와 고성지방에서 소작거부와 불경작동맹 및 농번기노동력 판매거부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30년경에는 결의서 및 진정서운동을 전개하였다.

다음 표를 보면 논 의 소작료율은 최고 75% 에서 최저 30% 에 이르고, 밭 의 경우는 최고 75% 에서 최저 20% 에 이르렀다. 일제시대 이와 같은 고율소작료가 가능했던 것은 소작료 구성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작료의 구성내용이 단순히 지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소작료율이 대개 50% 이다. 그러나 지대에 토지개량비와 수리비(水利費)가 더해지고 종자·농기구·비료·농약 등을

전남의 소작료율 현황

(단위 : %)

정수방식 / 구분	논			밭		
	최 고	보 통	최 저	최 고	보 통	최 저
정 조	70	50	30	60	40	20
타 조	70	50	40	60	50	30
집 조	75	55	30	75	55	30

출전 : 조선총독부, 『朝鮮の小作慣行』 상권, 238~239쪽.

선대하고, 그 원리금을 소작료에 포함하면 60~70%로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다 조세공과금을 포함하면 정조법의 경우 58~90%, 타조법은 50~79%, 집조법은 50~80%에 이른다.